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3. 4 선고 2015가단534641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6. 3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1, 2, 13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부분 0.5㎡ 지상 벽돌조 대문기둥을 철거하고,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6.6㎡ 지상 벽돌스라브조 1층건물(차고지), 별지도면 표시 7, 8, 11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4.6㎡ 지상 벽돌스라브조 2층건물(주택)을 철거하고,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김소영

별지